

## (24) 지방세 지출보고서

###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14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62,921,601,170
	비과세	18,978,829,530
	감면	43,942,771,640
지방세 징수액(B)		0
비과세·감면율(A/A+B)		100.0

####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4년(결산)	비중
총 계		62,921,601	100.00
1	일반공공행정	11,818,849,490	18.78
2	공공질서 및 안전	74,827,860	0.11
3	교육	3,071,819,620	4.88
4	문화 및 관광	440,505,350	0.70
5	환경보호	2,277,250	0.00
6	사회복지	3,186,406,560	5.06
7	보건	288,494,220	0.45
8	농림해양수산	3,105,334,290	4.93
9	산업·중소기업	2,319,329,130	3.68
10	수송 및 교통	335,917,780	0.53
11	국토 및 지역개발	31,692,228,930	50.36
12	과학기술	0	0.00
13	국가	5,334,753,270	8.47
14	외국	0	0.00
15	기타	1,250,857,420	1.98

###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4년(결산)	비중
<b>총 계</b>		62,921,601,170	100
	보통세	62,559,196,280	99
	취득세	45,429,482,120	72
	등록면허세	1,592,768,800	3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66,939,250	
	재산세	13,807,704,580	22
	자동차세	719,798,880	1
	지방소득세	1,604,510	
	담배소비세		
	(구)취득세	427,004,700	1
	등록세	513,893,440	1
	목적세	362,404,890	1
	지역자원시설세	362,404,890	1
	지방교육세		

###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3년(결산)	'14년(결산)	증감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3,465,975,760	21,360,171,980	17,894,196,22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8,083,650	8,485,518,510	8,467,434,86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313,060,940	3,605,860,210	3,292,799,27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51,146,300	2,947,011,430	2,895,865,130
국가에 대한 비과세	3,035,967,550	5,311,051,910	2,275,084,36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233,532,120	2,199,603,660	1,966,071,54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663,161,420	2,234,277,420	1,571,116,000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2,637,950	1,342,635,750	1,339,997,800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0	1,187,442,980	1,187,442,98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1,919,877,180	3,104,629,800	1,184,752,620
신택재산에 대한 비과세	121,899,280	1,028,243,710	906,344,43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754,293,070	2,101,327,700	347,034,63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41,686,150	189,413,430	147,727,280

(단위: 원)

감 면 유 형	'13년(결산)	'14년(결산)	증감액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1,287,046,420	1,416,281,090	129,234,67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252,937,170	372,643,590	119,706,420
종교,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286,505,760	404,485,380	117,979,620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0	99,080,790	99,080,79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6,144,170	86,063,480	79,919,31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119,373,140	170,702,550	51,329,410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0	45,359,030	45,359,03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1,954,840	50,929,100	38,974,26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21,462,270	46,837,260	25,374,990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0	21,949,450	21,949,450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146,783,190	165,800,080	19,016,89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84,360,840	102,589,970	18,229,130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215,159,830	232,459,810	17,299,98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64,530	16,366,920	16,302,39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443,128,760	458,918,080	15,789,32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81,332,590	197,045,630	15,713,040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70,053,640	79,483,420	9,429,780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53,110,330	58,975,040	5,864,71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70,103,000	74,823,060	4,720,06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1,860,050	4,864,130	3,004,080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0	2,277,250	2,277,250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0	2,000,000	2,000,000
임업인에 대한 감면	0	945,190	945,190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81,106,960	81,830,400	723,440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0	642,900	642,900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13,706,910	13,893,430	186,520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0	145,410	145,41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3,882,650	4,015,990	133,34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88,396,720	88,514,120	117,40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1,662,880	1,751,910	89,03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206,522,140	206,595,800	73,660
자동차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2,315,410	2,370,600	55,19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770,720	814,670	43,95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919,900	936,990	17,09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7,500	11,110	3,610
무료도선용 선박 등에 대한 비과세	14,760	15,480	720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28,710	29,190	480

(단위: 원)

감면 유형	'13년(결산)	'14년(결산)	증감액
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	1,960	2,060	100
갯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2,670	2,740	70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2,450	12,520	70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3,960	3,830	-130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52,630	47,160	-5,47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3,540,710	3,460,600	-80,110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055,970	971,060	-84,91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1,632,880	1,547,290	-85,59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5,205,220	3,924,270	-1,280,95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12,651,500	11,319,500	-1,332,00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1,744,460	19,653,050	-2,091,410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17,176,490	15,074,510	-2,101,98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3,386,230	47,870	-3,338,36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12,967,640	7,688,820	-5,278,820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30,760,680	22,623,200	-8,137,48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55,895,950	43,585,300	-12,310,650
장애인에 대한 감면	485,591,230	471,183,130	-14,408,10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69,243,130	52,331,530	-16,911,6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58,418,050	41,402,390	-17,015,66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55,728,810	33,858,430	-21,870,38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789,252,880	750,660,220	-38,592,660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30,427,990	71,195,880	-59,232,11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310,407,550	249,302,640	-61,104,91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584,938,490	520,477,080	-64,461,41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399,495,930	320,026,140	-79,469,790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267,472,520	105,472,160	-162,000,360
생애최초 주택 취득을 위한 감면	347,359,330	1,600,000	-345,759,330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707,736,110	10,948,000	-696,788,11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1,718,843,320	546,468,000	-1,172,375,320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1,191,350,760	7,075,000	-1,184,275,760

## II.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b>일반공공행정</b>		<b>합 계</b>	<b>11,818,849,490</b>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및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b>소 계</b>	<b>3,104,629,800</b>
		취득세	1,437,245,820
		구)취득세	10,280,000
		등록세	14,881,340
		등록면허세	4,370,570
		주민세	4,100,000
		재산세	1,547,273,060
		자동차세	7,712,290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78,766,720
2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b>소 계</b>	<b>2,947,011,430</b>
		취득세	2,947,002,430
		등록세	9,000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b>소 계</b>	<b>7,688,820</b>
		재산세	7,567,930
		지역자원시설세	120,890
4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b>소 계</b>	<b>52,331,530</b>
		취득세	11,839,540
		구)취득세	385,800
		등록세	271,370
		재산세	35,850,070
		지역자원시설세	3,957,750
5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b>소 계</b>	<b>3,605,860,210</b>
		지역자원시설세	3,605,860,210
6	지방공사등에대한감면·지방공사·공단등에대하여취득·등록면허·재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16,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④)	<b>소 계</b>	<b>2,101,327,700</b>
		취득세	794,665,070
		재산세	1,306,662,630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b>공공질서 및 안전</b>		<b>합 계</b>	<b>74,827,860</b>
7	경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 한국경생보호 공단 등의 경생보호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①)	<b>소 계</b>	<b>2,740</b>
		재산세	2,740
8	천재등으로인한대체취득등에대한비과세·천재·지변·소실·도괴기타불가항력으로인하여멸실또는파손된건축물·선박·자동차및기계장비를개수또는대체취득하는경우등에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 §92③)	<b>소 계</b>	<b>74,823,060</b>
		취득세	389,530
		자동차세	74,424,530
		등록면허세	9,000
9	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②)- (경기 파주) 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b>소 계</b>	<b>2,060</b>
		지역자원시설세	2,060

###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b>교육</b>		<b>합 계</b>	<b>3,071,819,620</b>
1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b>소 계</b>	<b>2,234,277,420</b>
		취 득 세	1,613,664,140
		등 록 세	44,510
		주 민 세	2,200,000
		재 산 세	538,592,220
		등록면허세	176,640
		지역자원시설세	79,599,910
		<b>소 계</b>	<b>3,830</b>
11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재 산 세	3,350
		지역자원시설세	480
		<b>소 계</b>	<b>750,660,220</b>
12	사립학교및외국교육기관에대한교세특례-사립학교및외국교육기관에대하여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41①,§41②,§41③,§41⑤)-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및유치원의 교육용부동산 학교의기숙사용부동산및학생들의실험·실습용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대하여대하여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42①, §42②, §42⑤)- 국립대학 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취 득 세	5,815,800
		등 록 세	40,080
		주 민 세	600,000
		재 산 세	660,218,140
		등록면허세	123,000
		지역자원시설세	83,863,200
		<b>소 계</b>	<b>814,670</b>
13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재 산 세	607,650
		등록면허세	24,000
		지역자원시설세	183,020
		<b>소 계</b>	<b>86,063,480</b>
14	학술연구단체및장학단체에대한감면-학술연구단체및장학단체의업무용부동산에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재 산 세	85,574,380
		지역자원시설세	489,100

###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b>문화및관광</b>		<b>합 계</b>	<b>440,505,350</b>
15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b>소 계</b>	<b>404,485,380</b>
		취 득 세	192,205,110
		구)취득세	1,921,920
		등 록 세	5,794,010
		주 민 세	6,321,000
		재 산 세	179,793,470
		등록면허세	9,000
		지역자원시설세	18,440,870
16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도서관에 관한 등기·등록·취득·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b>소 계</b>	<b>16,366,920</b>
		재 산 세	16,360,530
		지역자원시설세	6,390
17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소통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사적자에 대하여 재산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12호)- 국보·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조례)- (서울 종로) 역사문화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b>소 계</b>	<b>19,653,0580</b>
		재 산 세	19,653,050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b>환경보호</b>		<b>합 계</b>	<b>2,277,250</b>
18	친환경건축물등에대한감면-녹색건축물인증등급,에너지효율등급에따라건축물취득 재산세 5~1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47②1호2호, \$47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절감률 등에 따라 취득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③)-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무용 건축물 취득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④)- 내진 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3①)	<b>소 계</b>	<b>2,277,250</b>
		재산세	2,277,250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b>사회복지</b>		<b>합 계</b>	<b>3,186,406,560</b>
19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b>소 계</b>	<b>11,319,500</b>
		지역자원시설세	11,319,500
20	장애인에 대한 감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b>소 계</b>	<b>471,183,130</b>
		취 득 세	185,565,580
		자동차세	285,617,550
21	한센환자지원을 위한감면-한센정착농원에거주하는한센환자가취득하는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할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	<b>소 계</b>	<b>15,074,510</b>
		재산세	13,636,090
		지역자원시설세	1,438,420
22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및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	<b>소 계</b>	<b>145,410</b>
		재 산 세	145,410
2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 등록면허주민세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면허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b>소 계</b>	<b>46,837,260</b>
		주 민 세	4,150,000
		재 산 세	37,069,610
		지역자원시설세	5,617,650
24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 주민세-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b>소 계</b>	<b>170,702,550</b>
		취 득 세	156,738,850
		주 민 세	500,000
		재 산 세	10,747,950
		지역자원시설세	2,715,750
2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2호)	<b>소 계</b>	<b>50,929,100</b>
		취 득 세	43,656,550
		재 산 세	6,718,850
		지역자원시설세	553,700
26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 안하거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1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1②)- 휴면예금 관리재단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3)	<b>소 계</b>	<b>12,520</b>
		재 산 세	12,520
27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군인·경찰·지방행정·교직원공제회가 회원용 소형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5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8①)-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5②)	<b>소 계</b>	<b>13,893,430</b>
		재 산 세	13,780,930
		등록면허세	112,500
28	국유공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유공사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 등록면허 주민세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국유공사 등 예유 및 자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 특수입구수행자 자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 국유공사 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한국노후복지연금공단의 노후시설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54①7호)	<b>소 계</b>	<b>197,045,630</b>
		취 득 세	89,826,190
		재 산 세	2,720
		자동차세	106,871,120
		등록면허세	345,6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①)- 보훈병원에 대한 주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0②)- 독립기념관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③)- 대한민국지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소 계	936,990
		재산세	936,990
30	주택거리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2)- 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소 계	7,075,000
		취득세	2,243,000
		구)취득세	2,416,000
		등록세	2,416,000
31	임대주택에대한감면-한국토지주택공사의60㎡이하매입임대용공동주택등에대하여취득·재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31④)-임대주택사업자가공동주택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취득·재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31①-③))-한국토지주택공사의임대목적소유하는소규모주택에대하여취득·재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32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일시적으로매입한미분양주택및부속토지에대하여재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34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주거용건축물및부속토지환매기간내재매입하는경우취득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34③)-부동산투자회사가임대목적으로취득하는주택취득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34④)-대한주택공사가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또는부동산집합투자기가취득한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를임대시재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34⑤)-준공후미분양주택에대한감면_2년이상임대취득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31의2①,§31의2②)-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담보로제공된주택재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35②)임차인의전세자금마련지원을위한주택담보대출대출주택에대한재산세액공제【재산세액-(담보대출금액*60/100*1/10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3)-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소 계	2,199,603,660
		취득세	2,013,242,000
		재산세	157,613,700
		지역자원시설세	28,747,960
3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이하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47,870
		재산세	47,870
33	생애최초 주택 취득을 위한 감면 -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36의2①)	소 계	1,600,000
		취득세	1,600,000

##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b>보 건</b>		<b>합 계</b>	<b>288,494,220</b>
34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사립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8②)-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공수 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종료)·재산세·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소 계	189,413,430
		취득세	148,167,880
		재산세	41,245,550
35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②)	소 계	99,080,790
		취득세	97,013,510
		재산세	2,067,280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b>농림해양수산</b>		<b>합 계</b>	<b>3,105,334,290</b>
36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농업인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부과(지방세특례제한법 §6)-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공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할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농업축산업에 대한 주민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1호)-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된 기립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광주 광산 평동산안도지 예정지구내 지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대천 유상 대전고령산안도지내 지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경남 양산 구 우상읍 내 농지 재산세 50% 감면(09년), 25% 감면(10년)- (경남 진주 초전정재공업지역 내 지경농지 재산세 부과(충남 보령 보령영천 태가빌예정지구 내 지경농지 재산세 과세)안 (경기 광주 자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경 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 감면	소 계	1,416,281,090
		취 득 세	1,412,912,700
		구)취득세	205,380
		등 록 세	3,163,010
		소 계	520,477,080
37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혁신사업에 대한 감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융자할 경우 자금원상정리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1호)- 농지장기임대사업 또는 영농규모화대사업에 따라 입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2호)-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을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혁신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영농규모화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제자 공공목적의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2제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을 및 그 부속토지의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372,643,590
		취 득 세	324,294,230
		구)취득세	288,750
		등 록 세	51,260
		재 산 세	295,812,570
등 록 세	8,318,900		
38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 소득세 면제(조특법 §66③)	소 계	372,643,590
		취 득 세	324,294,230
		구)취득세	288,750
		등 록 세	51,260
		재 산 세	27,108,950
등록면허세	20,900,400		
39	임업인에 대한 감면- 임업인이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할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③)- 임업에 대한 주민(종업원·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 (조특법 §106의2①1)	소 계	945,190
		취 득 세	945,190
4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부과(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206,595,800
		재 산 세	206,595,800
41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등록 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수산업에 대한 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어업인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 (조특법 §106의2① 1호)	소 계	2,000,000
		등록면허세	2,000,000
42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영어조합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67③)	소 계	47,160
		재 산 세	47,160
43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자금원상정리기 등록면허세 감면(75%) (지방세특례제한법 §10①1~5)	소 계	232,459,810
		등록면허세	232,458,910
44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업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50% 감면,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②)- 농협수협산림조합·업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④)-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 1호)	소 계	320,026,140
		취 득 세	117,267,450
		주 민 세	33,623,650
		재 산 세	167,530,530
		등록면허세	1,604,510
45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고, 6개월 이상 비워 둔 주택 재산세 면제(삭제2010.1.1)-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33,858,430
		취 득 세	28,175,050
		재 산 세	5,683,380

9. 산업 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b>산업·중소기업</b>		<b>합 계</b>	<b>2,319,329,130</b>
46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2호)	<b>소 계</b>	<b>249,302,640</b>
		취득세	227,984,700
		재산세	15,752,940
		등록면허세	5,565,000
47	산업기술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주민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 ④)	<b>소 계</b>	<b>3,460,600</b>
		취득세	550,000
		재산세	2,910,600
48	산업일지 지원을 위한 감면-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포럼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③)-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인천·광주·강원·전남) 테크노파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광주) 광주디자인센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면제- (서울·경기)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제주) 토평공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5년 안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강원·경기·문경)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100% 3년간 재산세 50% 감면- (대구·경북) 우수항토기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감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 평택·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 고용창출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 감면	<b>소 계</b>	<b>45,359,030</b>
		취득세	45,359,030
49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고도기술수반 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 (조례로 15년 범위 내 감면 확대 가능)	<b>소 계</b>	<b>102,589,970</b>
		취득세	91,870,800
		재산세	10,719,170
50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80, 조례)	<b>소 계</b>	<b>642,900</b>
		등록면허세	642,900
51	에너지·자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1)-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법인에 대해 설립·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배제 및 50% 감면(조특법 §119⑤, §1011제1자)-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제주) 한곡전력공사의 도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강원·충북·경기)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b>소 계</b>	<b>105,472,160</b>
		취득세	80,779,690
		재산세	24,692,470
51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 등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②)	<b>소 계</b>	<b>458,918,080</b>
		취득세	318,340,450
		자동차세	140,577,630
52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 4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261215, 1617-19232425262729, §120①511-1516192021222325, §120②249101213), 50% 감면(조특법 §119①1328, §120①1224)	<b>소 계</b>	<b>1,342,635,750</b>
		취득세	44,824,800
		자동차세	1,297,810,950
53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상환용 토지 재산세 50% 감면(삭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3-7-10-11, §120①2-6-9-10, §120②7-8)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업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②)-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 보험으로 분리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③)-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④, §120⑤)	<b>소 계</b>	<b>10,948,000</b>
		취득세	10,948,000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b>수송 및 교통</b>		<b>합 계</b>	<b>335,917,780</b>
54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주만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주만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철도사업목적 지방공사 재산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100%)(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b>소 계</b>	<b>4,864,130</b>
		취 득 세	2,843,710
		재 산 세	2,020,420
55	무료도선용 선박 등에 대한 비과세- 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전마용 선박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4호 , §145②)	<b>소 계</b>	<b>15,480</b>
		재 산 세	15,480
56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	<b>소 계</b>	<b>165,800,080</b>
		취 득 세	165,800,080
57	하이브리드자동차에대한감면-하이브리드자동차취득세면제(취득세액140만원한도)및공제(140만원초과시14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66③)전기자동차취득세면제(취득세액140만원한도)및공제(140만원초과시14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66④)-알뜰주유소가한국석유공사와 석규제총구매약을체결하고구매하는석유제품의무구매비율(50%)을충족하는경우 석유제품판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62의2)	<b>소 계</b>	<b>79,483,420</b>
		취 득 세	79,483,420
58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6%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서울 부산대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5% 감면	<b>소 계</b>	<b>3,924,270</b>
		자 동 차 세	3,924,270
59	운송사업원유환원감면-운수연수원에대한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공시설·면제(식재·시·내버스·운송사업및노면버스·운송사업등에서사용하되유류자동차취득세50%및등록면허세감면75%) (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시·내버스·미용버스·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취득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70②)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	<b>소 계</b>	<b>81,830,400</b>
		취 득 세	81,740,320
		등 록 면 허 세	90,080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b>국토 및 지역개발</b>		<b>합 계</b>	<b>31,692,228,930</b>
60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 수용·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b>소 계</b>	<b>71,195,880</b>
		취 득 세	57,271,960
		구)취득세	949,430
		등 록 세	12,974,490
61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남동구·서구, 경기 평택시·여주군·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b>소 계</b>	<b>8,485,518,510</b>
		취 득 세	7,644,855,080
		재 산 세	840,663,430
62	산단조성에 대한 감면- 산단조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수요권은 재산세 50% 감면- 산단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면제 조성공사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면제수요권은 재산세 50% 감면- 개발사업 시행시 개발조성 후 분양·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수요권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②③④)- 산단조성 내 기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농공단지 후폐업 공장에 대해 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부산 해운대 신타미 자립산단조성내 최초 입주자의 사용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3년간 50% 감면 (광주 광안리 광주첨단과학산단조성내 광동공단지내 공동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3년간 50% 감면 (대전 유성 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강원 동해시 북방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3년간 50% 감면	<b>소 계</b>	<b>546,468,000</b>
		취 득 세	381,833,730
6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③)	<b>소 계</b>	<b>21,360,171,980</b>
		취 득 세	19,734,364,350
		구)취득세	362,266,150
		등 록 세	436,146,130
		재 산 세	813,123,750
64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2)	<b>소 계</b>	<b>29,190</b>
		재 산 세	29,190
6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b>소 계</b>	<b>41,402,390</b>
		재 산 세	41,402,39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66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2②)-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60㎡이하 5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①)	소 계	1,187,442,980
		취 득 세	1,187,442,980

## 12.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b>국 가</b>		<b>합 계</b>	<b>5,334,753,270</b>
67	국가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만·재산·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한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5,311,051,910
		취 득 세	2,284,260,230
		구)취득세	37,716,000
		등 록 세	38,102,240
		주 민 세	2,800,000
		재 산 세	2,874,468,330
		자 동 차 세	21,913,290
		등 록 면 허 세	237,000
		지 역 자 원 시 설 세	51,554,820
		68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취 득 세	21,949,450		
69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① 2호, §109②, §145②)	소 계	1,751,910
		재 산 세	284,770
		지 역 자 원 시 설 세	1,467,140

## 13.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b>기 타</b>		<b>합 계</b>	<b>1,250,857,420</b>
70	임사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①)-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소 계	22,623,200
		재 산 세	17,991,620
		지 역 자 원 시 설 세	4,631,580
71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호)-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15② 1호)-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대한 대도시 중과배제(지방세법 §9 2·3·5·6·7호)	소 계	1,028,243,710
		취 득 세	1,028,243,710
72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15① 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73③)	소 계	971,060
		취 득 세	971,060
73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2호)	소 계	58,975,040
		취 득 세	48,399,770
		구)취득세	10,575,270
7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3·4호)-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정부가 5할 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의 개정 폐지로 인하여 조직변경됨에 따른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 2호, §120① 3호)	소 계	43,585,300
		취 득 세	43,585,3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75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계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② 4호)-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40② 3호)-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40② 4호)-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40② 5호)-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기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 계	88,514,120
		취 득 세	5,079,870
		자 동 차 세	78,218,050
		등 록 면 허 세	5,216,200
76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②③2)-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 1호)	소 계	1,547,290
		재 산 세	1,302,650
		지 역 자 원 시 설 세	244,640
77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새마을금고간 또는 신협간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 2.3호)	소 계	4,015,990
		취 득 세	428,400
		주 민 세	55,250
		재 산 세	3,532,340
78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1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경남)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추가)	소 계	11,110
		재 산 세	11,110
79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2,370,600
		주 민 세	719,850
		재 산 세	1,049,110
		자 동 차 세	540,150
		등 록 면 허 세	58,650
지 역 자 원 시 설 세	2,840		